

제43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1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6)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1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6)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6)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8)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7)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4)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4)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2)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9)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9)
26.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27. 폐철도 및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2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1)
2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5)
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3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3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5)
3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3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3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7)
3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6)

상정된 안건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4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6) 4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4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4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4
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4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4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4
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4
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4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4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4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4
1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4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	13
26.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17
27. 폐철도 및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17
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21
3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24
3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5)	24
3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25
3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25
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26
3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7)	28
3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6)	28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복기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3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도 답변하실 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6)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1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10시06분)

○소위원장 복기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비롯한 총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손명수 위원님, 송기현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께서 제시간에 참석하셔서 의결정족수가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시에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도 거쳤었고 그리고 소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전 규제에 대한 이견 등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소위로 반력을 요청했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쪽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오늘 쟁점이 되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의결했다가 현재 판결 이후에 저희가 반력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12조 제5호 삭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제12조(이용자의 의무)에서 제5호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이 법에서 정한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 이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수 위원 삭제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오세일 이 부분은 제가 낸 의견은 아니고요. 12조 5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북 간사님 방에서……

○손명수 위원 전문위원이 본인의 의견을 내시는 게 아니라 이 안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오세일 이용자의 의무에서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 이 부분은 사실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것은 지금 대안을 보고 있는 거지요? 대안의 몇 페이지?

○전문위원 오세일 대안 14페이지입니다. 12조 제5호 삭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14페이지 12조 5호를 삭제하자.

이 부분은 설명을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위험 판결이 난 게 어쨌거나 면허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방향으로 현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공청회에서는 면허도 굳이 필요 없고 신분 확인만 필요하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현재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려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면 굳이 여기서 이러저러한 법안을 따로 넣지 않고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항에 안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서 손명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당시 공청회에서도 지나친 안전 규제가 오히려 범법자를 쓸데없이 양산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장치, 안전보호구 착용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이 지난 공청회와 소위원회의 취지였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이것을 아예 다 빼냈을 때는 자연스럽게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 우리 내에서 이 PM을 공식화시키는 의미를 가진 이 법 그리고 특히나 이 법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 민생이 불편하다라는 그 첫 번째가 마구잡이로 주차되어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인도를 가로막고 서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5조를 그냥 들어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오세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는데, 천준호 의원실에서는…… PM법 검토의견 이것 혹시 다 나눠 드렸어요? 천준호 의원실 누구 왔습니까? 다 배부를 해 주시지요.

○손명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토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었는데 그때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하면서 면허에 관한 규정이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좀 대립이 되었다고 할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은 지금 많은 젊은이들과 이삼십 대까지도 포함해서 특히 출퇴근 시에 많은 분들이 PM을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주차 문제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현재 25km/h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km/h 수준으로 낮춘다 그게 핵심이었고 주차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게 하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면허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그때 이 법을 할 때 우리 교통소위에서는 면허 부분은 이 법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이걸 제대로 못 봤었는데 12조 이용자의 의무에 5호가 ‘도로교통법 및 이 법에서 정한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 이게 면허 규정과 연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면 면허 규정은 도로교통법으로 넘기고 거기서 하는 거고 이 법에서 하는 것은 오롯이 PM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이용의 편의성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 등을 비롯해서 좀 더 안전관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 5호를 들어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국토부에서 답변을 주시든가 다른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홍지선입니다.

손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 천준호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2조 5항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이 법에서 정한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문안이 있을 때 도로교통법에서 면허 및 안전모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도로교통법에 있는 면허 및 안전모 조항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 형태로 법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항이 존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경찰청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확인했는지를 여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국토부2차관 홍지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개별 조문에 대해서 협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손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저희가 경찰청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경찰청은 12조 5호에 대한 부분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왔거든요.

내용은 예를 들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 약물운전 금지, 야간 도로 통행 시 전조등

작동 또는 발광장치 착용 의무 등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차관님,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안 넣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송기현 위원 자동차관리법이 있어도 차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이 법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이 법에 그것 안 넣어 놔도 PM을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면허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5호 보면 기타 이 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켜라, 법에 정해 놓은 건 당연히 다 지켜야 되는 거지 그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굳이 안 써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경찰청 의견의 취지는 알겠는데 괜히 논의가 돼서 이게 면허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지니까 면허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개인형 운송장치를 사용할 때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면허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에 면허가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천준호 위원님이 검토의견 내신 것을 보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여기에 지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대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면허를 그냥 확인해야 되느냐 이거랑 좀 다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차관님도 그것 보셨지요? 27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여기에 교육 이수율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서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교육 이수하는 것하고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면허는 갖고 있어도 교육 이수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송기현 위원 그리고 면허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을 추가로 의무를 부담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등록 취소하는 것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교육 이수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자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PM 출퇴근 등 이런 일상용 이동수단을 저희가 활성화하는 취지는 탄소 감소 등 핵심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운전면허 확인 등을 이 법에 의무화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급감할 수도 있고 PM 산업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운전면허체계는 도로교통법 소관 사항이니까 새로운 PM 면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설할 때는 따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운전면허를 명시적으로 넣게 되면 교육 이수에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어쨌든 간 일반 자동차라든지 원동기도 면허를 따더라도 교육 이수에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PM기기에 대해서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천준호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했던 것을 완화시킨 것이 속도를 20km/h로 내렸을 경우에는 중대 사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급감한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지난번 공청회 때 확인했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실 25km/h로 해도 잘 안 하는데 20km/h로 떨어뜨렸으니까 그것은 사용자가 속도제어장치를 만들면 그것은 20km/h 이상으로 안 가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 조항으로 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것까지 통째로 같이 떨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굳이 담지 말고 사실상 속도와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했던 것인데 과연 PM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 PM들이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PM 사업자들이 있고 실제 아직도 보도를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는 그런 PM들이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안에서 떨어내고 PM 관리 중심으로의 법으로 수정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천준호 위원**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 논의를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지난 2025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와 관련된 사건 판결 이후에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던 주요 내용들에 따르면 운전면허라든지 그리고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것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조목조목 의견을 달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미 저희가 논의했던 PM 법안에서 배제했던 부분들이 배제할 명분 자체가 좀 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심지어는 이 내용까지 있습니다. 20km/h로 낮추더라도 이런 조치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입법 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판결의 주요한 내용들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위험성에 기초해서 예를 들면 법적인 규제장치를 취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제도 그리고 안전장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PM법이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에 더해서 그 부분들이 보완되는 게 필요한 게 사실 오늘 논의의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의견을 별도로 드렸는데요.

대여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최소한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 운전면허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그러니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통해서, 면허를 적용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에 면허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김희정 위원 저도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발현되는 순간 업자들은 정확하게 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행 만들어 온 안에는 그냥 정말 교육 이수 여부만 되어 있는데 벌금형이 또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대여업자와 빌리는 사람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전면허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는 게 현장의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증 안에 교육 이수 여부가 왜 몇 년 안에 교육 받은 면허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히려 교육 이수 여부도……

○소위원장 복기왕 유효기간이 나와 있지, 운전면허 유효기간.

○김희정 위원 유효기간, 그러니까. 그런데 몇 년 안에 교육을 안 받으면 그게 유효하지 않거든요, 자동차 면허도.

○소위원장 복기왕 그런 게 있나?

○김희정 위원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니까 갱신.

○김희정 위원 그래서 교육이수증을 따로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와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법이든 시행령이든. 그래야지 빌리러 가는 사람도 대여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임할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어쨌든 규정에 보면 교육 이수라는 규정이 있고 교육 이수를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천준호 위원님이나 김희정 위원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이 교육 이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이수 그다음에 운전면허 취득 그 두 개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복기왕 그렇지요.

○송기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까요?

○손명수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소위 때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토의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다 누구나 공감할 하는데, PM의 안전을 좀 더 보장하자 이 취지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 이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대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여사업자는 20km/h 이하의 PM만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속도를 낮추는 거지요. 그리고 주차 그것 다 관리하게 하고 협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을 최소한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 교육도 안 받고 마구잡이로 타고 그다음에 아무 데나 버려 놓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가장 큰 취지거든요. 여기에서 면허가 딱 걸려요. 이 면허가 원동기 면허거든요.

그런데 원동기 면허를 지금 14세·15세 이런 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도로교통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못 하고 있지요. 경찰청이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PM법을 만들면서 면허까지 여기에 하면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여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강화해서 그러면 이것 원동기 면허 없이는 이용을 못 하게 하자, 아예 대여사업을 못 하게 하자 이렇게 갈 것인지,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오륙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상 이용을 못 하게 된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공청회도 치열하게 했고 여러 의견들 모으고 모은 결과를 냈는데 현재에서 면허 부분에 대한 위험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상반기 중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시민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PM들을 보면서 우리 제도가 이것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내에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로 넘기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운전면허, 아까 송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이수하고 운전면허 병행해서 표기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운전면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정리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과도한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현재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업계에서 아마 지난번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사용하는 게 과도한 것이라라고 해서 위험심판 청구를 했는데 현재가 그것이 전혀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지해 주는 형태의 법안을 넣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넣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뭐랄까요 너무 방어적인 입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이수 부분도 의미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넣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위원장 복기왕 제가 생각할 때는 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 교육 이수는 왜 해요? 오히려 그분들의 허들만 더 높여 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 이수를 빼야 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천 위원님 주신 의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에 ‘교육 이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를 ‘운전면허 이동장치 면허가 없는 자에게 했을 경우에 등록을 취소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숙성이 좀 덜 됐다, 한 번 더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실무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서 안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법안이 처리가 돼서 PM법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불비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불편도 느끼는 게 현실이어서 어쨌든 처리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등록취소 문제는 여기서 교육 이수를 받지 않아도 등록 취소하는 것으로 원래 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이수를 운전면허로 대체한 것뿐이지 등록을 취소시키는 목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로 들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교육 이수로 사용의 자격을 줄 거냐 아니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줄 거냐가 쟁점인데 그것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이 체계 안에서 갖추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하면 그게 업자들의 사업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소위원장 복기왕** 아니요, 그 부분은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이것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여기 있는 12조 5호 이 부분을 들어 내면 아까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 면허 부분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보호장치에 대해서도 거기에 나오는 조항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포함을 안 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천준호 위원** 그러면 저도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5호를 제외하는 게 제가 경찰청에 확인하면서는……

○**소위원장 복기왕** 풀어 주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적용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천준호 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동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경찰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존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 부분을 존치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의 의견, 이것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그것을 없애더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준수해야 될 면허나 안전모 등의 의무는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고 하는 게 명확하다면 저도 5호를 빼는 것에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전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는 차원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면허는 정리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소위원장 복기왕** 정리가 된 거지요.

○**천준호 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쟁점은 무엇이나면 면허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가 그다음 쟁점인데 지금은 그 면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최초에 이 PM법과 관련된 법을,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법안에도 면허에 대한 확인시스템을 원래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는 그게 빠졌는데 아마도 교육 이수로 대체하면서 그것을 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면허 사용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 게 전제가 된다면 PM법에는 당연히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넣어 주면 앞의 그런 해석을 전제로 해서 다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 문구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하고 조금 이따가 다른 법안이 또 있는데, 폐철도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금방 끝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면 4월 30일 우리가 마지막 상임위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그 전에 마무리하고 싶은 소위원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섬세한 문구와 그리고 예를 들면 면허도 확인하고 교육도 하는 이런 이중 허들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확인해 주세요, 대강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치된 거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경찰청의 의견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로지 사고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게 그들의 시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빠졌을 경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천 위원님이 확인한 바와 다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기관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면 그다음에 교육 이수라든지 이중 허들 장치와 문구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다음번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사족 같지만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예.

○손명수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쟁점 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경찰청하고 협의 내용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을 너무 이렇게 좀 점잖게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핵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바를 얘기하자면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도. 경찰청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하면 돼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PM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법에서 지금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인도에 버려지고 아무 데나 주차하고 심지어는 전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이 법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도 의무를 부과하고 대여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도 최소한의 교육은 받아라 또 연령 제한까지.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의 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면허는 살아 있는 겁니다. 면허는 자동차도 다 도로교통법이고 모든 운송수단의 면허는 도로교통법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가 이 PM법에서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면허 확인 이거를 지금 굳이 여기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넣었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원하는 취지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다른 현상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국토부가 정확하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경찰청하고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아니, 경찰청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법을,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법이 없어도 그냥 경찰청 자기들이 하면 되는 의무를, 이 체계적인 관리법을 걸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제정이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번 회의 때 보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면허를 넣어서 해도 괜찮겠는지 대여사업자협회하고도 정확하게 의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어렵습니다. 다음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의견들 다 내서 한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이용자와 국민들께서 우리 국토위 소위원님들의 노고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10시42분)

○소위원장 복기왕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별지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보라는 말이지요? 뭘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전문위원 오세일 수정의견은 별지로 배부를 해 드렸고 소위 자료 앞쪽에 수정의견 내용이 요약돼 있는데 소위 자료 1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 주요 수정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운송플랫폼사업과 현행법의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간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화물정보망(폐쇄형)을 제공하는 운송가맹사업과 달리 화물운송플랫폼(개방형)을 불특정다수의 이용회원을 상대로 제공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운송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안전운임 관련 규정에서 운임에 관여하지 않은 플랫폼사업자는 적용받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신설에 따라 기존의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개정안에 따른 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별도 구별 실익이 없으므로 인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4조의5, 등록기준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포괄위임이 되지 않도록 사업 등록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여 수정하였고, 제34조의7,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플랫폼 내 무허가 주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이용회원에게 고지하는 금지행위에 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위반하여 화물차주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법적 중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9, 개선명령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중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삭제하였고, 제34조의10, 등록취소와 관련해서는 개선명령 불이행만으로는 영업정지 없이 필수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운송플랫폼사업의 필수적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며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를 필수적 취소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34조의6제2항(이용회원에 대한 이용요금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였고,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에 신설되는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규정을 보완 하였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플랫폼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등이 법 시행 당시 화물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되 3개월 이내에 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법 개정 취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지난번 논의에서도 명확하게 안 된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화물정보망하고 화물운송플랫폼 차이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이 법에서 구분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정보망 자체는 가맹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폐쇄형이고요. 화물운송플랫폼은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요금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토부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 수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김완국**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이용요금은 구독료 형태가 될 거고요. 월 얼마 정도의 구독요금을 신고운임으로 제시하면 그 운임을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신고운임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김완국** 일단 그거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계랑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희정 위원** 말이 업계랑 협의지 어쨌든 정부의 가격 개입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화물정보망하고 화물운송플랫폼 폐쇄형과 개방형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 망 안에서 분리를 해서 단일 이름으로 끌고 가면서 소위 접속의 레벨을 나누거나 이렇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김완국**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김희정 위원** 화물정보망과 화물운송플랫폼을 완전히 따로 뚝으로써 사실상 이거는 정보망을 하나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업종이 신설되는 데 이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화물정보망과 화물운송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사용자의 레벨을 별도 구성을 할 경우에는 업종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단계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온 법은 아예 업종을 신설하는 그런 법이라는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위원님, 이 사항이 없던 거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규상에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물정보망이라든지 화물운송플랫폼 기존에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화물정보망은 기존에……

○**김희정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별도 업종으로 하나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망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를 분리하거나 어떻게 원활하게 하는지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그다음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관계자들 모두가 다 반대 의견인 걸로 여기 저희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취합이 다 제대로 됐습니까?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김완국** 예. 이 부분은 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업계에서 의견 낸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안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관계자 이견 있는 내용만 저희 보고서에 올라와 있고 수정안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여러 단체들이 동의했다라는 의견은 공식적으로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하나 가지고 위원장님 방에서 법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아니면 저희 보고서에 이렇게 반대 의견 공식적으로 제출된 이 관계 단체들로부터 실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겠다라든지 그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단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심지어는 공정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와 있네요.

○**소위원장 복기왕**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김완국**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자 화물운송연합회, 화물연대, 주선업계 다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이 안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그것이 여기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정위의 의견도 저희가 중복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반영을 해서 수정의견으로 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반영한 내용이 지금 수정의견으로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복기왕**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나름대로 업계의 의견을 다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또 이견 있는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도 말씀 주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화물운송 플랫폼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아까 특히 이용요금 부과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없는데 신고만 하게 되면 결국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요금 상한범위나 적정 요율과 산출 방법 이런 것들을 하위법령에 고시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도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를 반영해서 결정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 신고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다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요.

34조의7 6항도 보면 여러 가지 등록에 대한 내용들이 쪽 들어 있는데 거기에 화주 운임을 포함해야지 과도한 중간 착취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플랫폼기업들이 정보도 좀 불투명하고 요금도 고무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이용약관을 사업자가 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표준약관 이런 걸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여러 플랫폼업체들 간에 기준이 성립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이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고 그 이후에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든 이런 것도 좀 대책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 플랫폼기업이 다단계, 하청, 착취 구조가 안 되는 형식으로 법안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김완국**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복기왕** 예,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김완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용요금 신고제 기준에 대해서 하위법령 마련하시라는 말씀은 하위법령에 저희가 마련할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 부분은 국토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보증보험 가입 부분도 가입을 하도록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법안에 들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중간 착취, 다단계 구조가 안 생기도록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김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렇게 법을 만들어 봐도 계속 다단계가 생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두 분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됐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인데 받아들여지십니까?

○윤종오 위원 해소가 다 됐나?

○김희정 위원 해소가 됐다고 말로만 하지 아무, 증거 자료가 온 적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복기왕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방금 얘기한 반대 의견이 온 것은 저희 회의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에 반영됐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반대 의견 온 게 어떻게 해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찬성이 왔다라는 자료는 저희 회의석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회의 자료에 기반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복기왕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니까 심사 보류하고 다음번에 이 자료 보강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문서로 걱정을 다 해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서술이 된 상태로 올라오면 다음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5항까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과 또 예민한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 아직 국토부의 검토가 덜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27.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10시58분)

○소위원장 복기왕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의사일정 제27항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일독을 했던가요?

○전문위원 오세일 예, 일독은 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일독을 했었지요?

○전문위원 오세일 예.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덜 끝났으니까 미루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위원장님, 폐철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16항에서 22항까지의 항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 대안에 대해서 다시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23항부터 26항에 대한 법률안은 저희가 지금 검토가 어느 정도 된 사항이라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사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차 정도면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대로 처리를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이 전달됐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지금 말씀드린 게 16항부터 22항에 대해서 병합 심리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면 16항부터 22항까지만 우선 하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수정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논의를 하는……

○소위원장 복기왕 그게 다음번 28일 날 정도에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이 법 처리가 가능하게끔 준비가 될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글썄, 그 이야기를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손명수 위원 제가 소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데 국토부하고 전문위원님, 두 분께 다 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검토보고 자료가 너무 애매하고 쟁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차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제출된 법안이 대부분 목적이 있잖아요,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있고. 그러면 A에서 B로 바꿀 때 뭐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A, B, C, D, E가 있는데 어떤어떤 의견을 냈는데 찬성은 큰 의미가 없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때문에 반대를 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해소가 됐다든가 이견 업계 이해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른 모든 여타가 다 동의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이게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모든 게 너무 두루뭉술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소위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 오세일 주의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정확하게 쟁점을 정리해 주시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법안이 처리가 되고.

지금 법안 처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하나 모두가 민생과 관련될 수도 있고 한 것인데 몇 번째 소위를 하는데 계속 공전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소위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한준호 위원 저도 한말씀만……

제가 지난 소위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일독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조용히 있었는데 저도 똑같이 수석님과 차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어 PM법도 현재의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확한, 수정사항들이 이런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를 쟁점 정리를 해 가지고 가져와 주셔야 이게 논의가 되는데 이것은 전에 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재 결정을 그대로 가져오고 이것을 마치 여기서 다시 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게끔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쟁점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운임 결정 개입이 되는 것이냐, 기사 선택 제한이 되는 것이냐, 사실상 운수사업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한 쟁점 제기가 기존 사업자들에게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들에게 내용을 정리해 왔고 법에는 수정의견에 운수사업자로 명확하게 박아 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쟁점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쟁점 해결을 했다고 말씀을 주셔야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 자체를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법안도 비슷할 것 같은 한데 쟁점이 명확하게 무엇이고 이것을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쟁점들을 정리해 왔다고 말씀을 주셔야 그다음에 의견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전문위원과 국토부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다음번 회의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지금 차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사일정 16항부터 22항까지는 준공영제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쟁점이 많아서 다음번으로 보류를 요청하신 거고요.

○소위원장 복기왕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심사하겠다고 이미 넘겼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오세일 16항에서 22항을 제외한 2건 정도는 처리가 가능해서 지금 차관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확하게 대안을 만들어 오세요. 이 전체에 대한 대안을 정리해서 만들어 오셔야 이게 정리가 되지 어떤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고 어떤 부분은 남기고 이 부분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2차 개정하겠습니다라는 의견까지도 국토부가 제안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당장 이것만 우선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무책임한 법안 심사를 하는 꼴처럼 보일 것 같아서 대안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덜 된 관계로, 여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기대가 크신데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소위원장 복기왕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지난 회의 때 국토부에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법 관련해서 국토부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대표발의자인 송기현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각 방에 보고를 드려라, 보고를 드리고 대표발의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을 하셨는데 철도국장님, 제가 김석기 의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배포한 자료 설명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거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송기현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그쪽은 직접 저희 과장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김석기 의원실 연락이 잘 안 돼서 아마 메일로 보내 드리고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교통소위 논의 결과 이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철도 유희부지 3615만 중에 65.7%를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1240만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게 1009만이고 활용 예정인 게 145만 그리고 안 쓰고 있는 게 86.4만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소유 폐역사부지 63개소 50.5만 중에서 29.6만은 쓰고 있고 20.9만을 안 쓰고 있어서 저희가 방금 국유지 중에 안 쓰고 있는 86.4만과 철도공사 소유 폐역사부지 20.9만에 대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수요를 제시하면 저희가 그걸 거의 다 반영을 해서 폐철도부지 관리방안과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기 소위 때, 5월 중에 보고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활용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된 부지 81%도 활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활용사업 경험이 많은 지자체를 토대로 5월 중 철도국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해서 폐철도부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도 도출하고 현재 지자체 제안서 접수 중인 26년도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개선안들 저희가 간담회 등이 끝나면 검토하려고 송기현 의원실과 현 정부안 대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다각적인 방안으로 진행 중입니다.

○**김도읍 위원** 철도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세 분의 대표발의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민홍철 의원님, 송기현 의원실에는 보고를 드리고 김석기 의원실에는 연락이 안 돼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데 회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연락이 안 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소위원장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저하고 소통하셨어요, 김석기 의원님이.

○**김도읍 위원**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통화했는데 안 왔다고……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잠깐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저하고 소통을 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국토부가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김도읍 위원** 국토부가 보고한 적이 없대요. 제가 그걸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도 조금 전에 철도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 회의 석상 각 테이블에 올라와 있던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김도읍 위원**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표발의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 효율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빨리 보고드리고 다음 소위 때 세 분 의원님 의견을 가지고 하면 법안 처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석기 의원실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십시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오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의원실에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지금 코레일 소유 폐역사의 소유관계를 다시 국토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 검토 중입니까, 철도국장님?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지금 저희는 그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김도읍 위원** 아, 법률 검토는 끝난 건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법률 검토가 끝나면…… 지금 잠정적으로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코레일 소유 폐역사를 국토부로 소유관계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지난주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보고서하고 해 가지고 김석기 의원실에도 의논을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김도읍 위원** 그리고 지금 법률 검토 중인 것, 소유권 이관 문제도 현재 상황이라든지 법률 검토가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검토한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함께 종합적으로 해서 김석기 의원실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소위 때는, 아마 다음 주에 소위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 법도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소위원장 복기왕** 마지막 30일 전에 소위를 한 번 더 열 거니까요 그때까지 안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8항, 29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아직 정리가 덜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11시11분)

○**소위원장 복기왕** 이어서 의사일정 30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여러 법률에서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제도를 도로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서 개정안이 현행 시설물안전법이나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에서는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철도·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점검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점검체계를 비교해 보면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외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에서는 교량·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도로관리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든 도로시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도로법에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교량·터널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자료에서는 국토교통부 의견이 불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오후에 국토교통부 의견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관 보고를 들으신 후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국토부2차관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설물안전법이라든지 기반시설관리법, 현행 도로법에도 정보시스템이 기존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안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부령에 있는 게 있고 고시에 있는 게 있고 타 법에 있는 게 있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안이고요.

정부 의견대로 제가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까지 넣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관리가 된다고 하니 정부 의견대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따로 의견 없으시지요?

○손명수 위원 아니, 제가 좀……

그런데 국토부에서 의견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체계가 기존의 도로시설 안전관리를 시설물안전법으로 쪽 해 왔는데 그리고 도로관리청이 지방도로, 국가도로, 고속국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법을 이렇게 바꿔서 좋아지는 게 뭐

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기준 이것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관리법에서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자체에서는, 별도의 법은 없고 규정, 규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법에 이 조항을 넣자는 취지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다른 개별법에 보면 김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철도나 항만 등에 관한 개별법에서도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 설치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도 조항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신중 검토에서 찬성으로 다시 바뀐 사례가 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아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검토의견을 내실 때 좀 아쉬워요. 법이라는 게 법 목적이 있고 시설물안전법을 만들 때 취지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하는 법이잖아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기본법이고 그리고 나머지 법들이 물론 다 있지요. 개별 시설물관리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안이 제출이 돼서 정부에서 의견을 내시려면 ‘기존의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 법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동의한다’ 이렇게 최소한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법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너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데 법을 ‘다른 분야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우리도 찬성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최소한 그러면 ‘항만·철도·도로·공항 이게 교통에 관한 기본 인프라인데 비교·분석을 해서 시설물안전법이 규정하고 관할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개별법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는데 도로법에서는 이런 게 빠져 있어서 차제에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의견을 내시고 동의를 하셔야지 처음에 ‘시설물안전법으로 되니까 이것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다가 ‘다른 철도법도 있고 항만법도 비슷한 게 있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담당 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담당자 의견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명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검토 과정에서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주시고 반드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93)

3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75)

(11시20분)

○소위원장 복기왕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 이상 2건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5쪽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시·도지사에게 관할 구역 내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적시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엄태영 의원안은 공포한 날을, 손명수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행령 마련, 행정적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로 시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손명수 의원님 안보다 3개월이 더 늘어나는 거군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 동의합니다.

○김도읍 위원 왜 동의합니까?

○손명수 위원 준비가 필요하니까.

○김도읍 위원 차관님, 자율주행은 지역별로 실증 사례 케이스가 많을수록 저희들이 상용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지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옮기는 것도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사실 저는 3개월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에서는 3개월 못 받습니

까? 도저히 어렵습니까?

○**김도읍 위원** 결심만 하면 정리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실무 부서에서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래요? 이게 사실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감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김도읍 위원** 그러면 절충안으로 4개월로 해 봅시다. 절충안으로 4개월로 해 봅시다.

○**손명수 위원** 해당 지자체하고 좀 더 소통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준비가 아니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리고 이걸 법률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손명수 위원** 그리고 이게 국토부장관이 하던 것을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동의했는데 3개월로 해도 내가 볼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실무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 해도 내가 보기에 크게 무리 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3개월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3개월로 했습니다.

또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 이상 2건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3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11시24분)

○**소위원장 복기왕**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 이상 2건의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철도공단 등 국토교통부 소관 다른 출연기관과 달리 현행법에 차입의 근거와 재원에 차입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입이 허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술원의 안정적·지속적 사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범위 추가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 사업과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기술원의 업무로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무인항공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정사업화를 통해 기술원이 무인항공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무인항공 분야 안전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및 검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각 근거 법률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된 것이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없으세요?

○한준호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손명수 위원 훌륭한 법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법을 개정 제안해 주신 윤재욱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두 분 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 이상 2건의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11시27분)

○소위원장 복기왕 의사일정 제3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소위 자료 1쪽입니다.

1번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의 통합입니다.

개정안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물류전문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확산을 위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총 29개에 그쳐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통합을 통해 인증·지정 절차, 점검, 심사기관 중복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다만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는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화주기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도 통합 시 화주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용어의 명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다음으로 개정안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인증제로 일원화하고 있으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사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는 다른 행정행위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정제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또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폐지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2번 우수 물류신기술의 우선 활용 및 담당자 면책제도 신설 등입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우수 물류신기술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담당자 면책제도를 신설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 취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지정제도를 두어 이의 보급·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제도는 2018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8건에 그치는 등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개정안은 우수 물류신기술을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발·운영하는 시설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고 해당 기술의 적용 또는 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료 27쪽입니다.

다만 안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제2호에서는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여 취소의 판단 기준을 공사·용역의 발주 가능성이나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 가능성에 두고 있는데 우수 물류신기술은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해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기술의 적용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또한 해당 신기술이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기술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 신기술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사·용역의 발주나 제품 구매에 대한 우수 물류 신기술 우선 적용, 우선구매의무의 적용이나 면책의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칙 적용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물류기업에 대한 유사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우수 물류 신기술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적용 그리고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하려는 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077)

3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36)

(11시33분)

○소위원장 복기왕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이상 2건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독을 했고 지난번 정부 측과 어떤 이견과 추가 검토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만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지난 소위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지원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에 대해서 국비지원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 정리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지난 소위 이후에 저희가 기획예산처와 국비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획예산처하고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어때요? 차관님 지난번에는 재정 당국의 의견에 따라서 국토부

가 국비지원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입장이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라고 당부를 드렸고, 지금 현재 재정 당국하고는 협의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협의할 용의만 가지고 있고 시작을 못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철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이후에 저희 철도입체화단장이 국토교통예산과장 면담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그리고 재정지원 필요성 등 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은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재정사업으로 설계된 점 또 어떤 사정 변화가 없어서 입법 취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직 법 제정 후 사업 출발 단계인 점, 국비지원을 논의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후 개별 사업 본격 추진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제가, 철도국장이 4월 27일 날 경제예산심의관을 면담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국장에게 위원님 지적사항, 재정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도읍 위원 국장님, 예컨대 과거 경부선 철도가 언제 완공이 되었는지는 아십니까, 철도국장님? 부산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연도까지 정확히 몰라서요.

○김도읍 위원 그게 근 1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100년은 채 못 되더라도. 그런데 이게 보면 쪽 부산 초입부터 부산역까지 도심을 가로질러요. 그리고 이게 도시 발전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거는 아마 국토부도 또 기획예산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는 이 부산 철도는 부산 시민만이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활용하는 그런 철도이고 그런 점을 볼 때 정부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그냥 고수할 게 아니라 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의 입장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국토부하고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해서 지하화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게 맞다.

사실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은 맞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정부나 부산시나 또 여타 지금 지하화를 요구하는 지역이 다 그럴 거예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는 난망하고 그래서 정부에다가 지원을 요구하고 그걸 입법화하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잘 협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저희도 계속 기획예산처 등에 철도망들이 국토균형발전, 지방주도성장에서 꼭 필요하고 특히 도심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 이제 국철도 철도도 지하화로 가는, 새로 만드는 철도들은 지하화하거든요. 예컨대 송기현 위원님 계시지만 지금 강릉이 그렇지요. 도심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그게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됐거든요, 지하로 KTX가 가는 게. 거기에 준해서 보면 기존에 지상으로 돼 있는 걸 지하화하는

것도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참고로 김희정 위원님께서 메모를 주시는데 경부선 철도가 1905년 1월 1일 날 개통했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배준영 위원님 마이크를 만지작거리시는 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사실은 철도가 100년이 지났지요. 경인선이 시작을 해서 마찬가지로인데, 사실 도심지역에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철도부지 활용 그리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아주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지하화를 통해서 도시의 주택공급이라든지 재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차관님도 재정 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가 걸림돌이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법 통과가 별 의미가 없어도 이 법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보류할 수는 없을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음 국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갖는 것으로 하고 실제 상반기에 그 첨예한 갈등거리만 빼면 나머지는 대안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두 법안 섞어서 대안도 다음번……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것은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소위원장 복기왕 협의를 다 하시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그래도.

○소위원장 복기왕 협의를 충분히 하고 양해까지 구해 주시고 대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양꼬를 빼고도 빵을 만들 건지 양꼬를 넣을 때까지 좀 천천히 기다릴 건지……

○소위원장 복기왕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해소되지 않으면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또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도읍 김희정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윤종균 윤종오 이연희 정점식
천준호 한준호

○청가 위원(2인)

엄태영 윤재옥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홍지선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도로국장 김효정

철도국장 김태병

중합교통정책관 정채교

항공안전정책관 유경수